

'기업활력법'을 통한 기업 지원방안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

Table of Contents

Section 1. 사업재편 정의 및 지원대상

Section 2. 기업활력법 도입배경 및 개정경과

Section 3. 적용대상(사업재편/과잉공급업종·신산업진출·산업위기지역/향상 목표치 만족 등)

Section 4. 지원내용(세제/금융·연구개발/상법/공정거래법 등)

Section 5. 지원 · 심의 · 승인 절차

Section 6. 사업재편 승인 현황

Section 7. 승인기업 사례로 보는 “기업활력법”

1. 사업재편 정의 및 지원대상

사업재편 정의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상당정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
(구조변경+사업혁신)

구조변경 합병·분할, 생산설비 및 영업자산 매각·매입 등

사업혁신활동 신제품·신기술개발, 생산·판매 효율화 등

* 관련법령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2016. 8. 13 시행, 2019. 8. 12 개정)

지원대상

- ✓ 과잉공급 해소를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고자 하는 기업
 - ✓ 신산업에 진출하기 위해 사업재편을 하고자 하는 기업
 - ✓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사업재편을 하고자 하는 기업
- ※ 2개 이상 기업의 공동사업재편도 신청 가능

2. 기활법 도입배경 및 개정경과 - 도입배경

기업활력법의 도입 배경

산업경쟁력 약화에 따른 기업경쟁력 약화 및 경제 발전 부진



사업재편 지연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초래 및 기업 활력 저하



사업재편 관련 규제 완화와 각종 혜택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특별법(한시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 정상기업 대상(법정관리, Work-out 기업 제외)
- 공급과잉업종,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 내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

2. 기활법 도입배경 및 개정경과 - 개정경과

기업활력법의 개정경과

2018. 3월 ~ 6월 .기업활력법 제도개선 TF 운영 및 제도개선 권고안 도출

2018. 6월 ~ 10월 제도개선 권고안 검토(관계부처)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18. 11월 ~ '19. 2월 기업활력법 제도개선 방안 국회협의

2019. 1. 23. 위성곤 의원, 기업활력법 개정안 발의

2019. 3. 12. 개정안 국회 상임위 상정

2019. 7월 국회 상임위 및 법사위 통과

2019. 8. 2. 국회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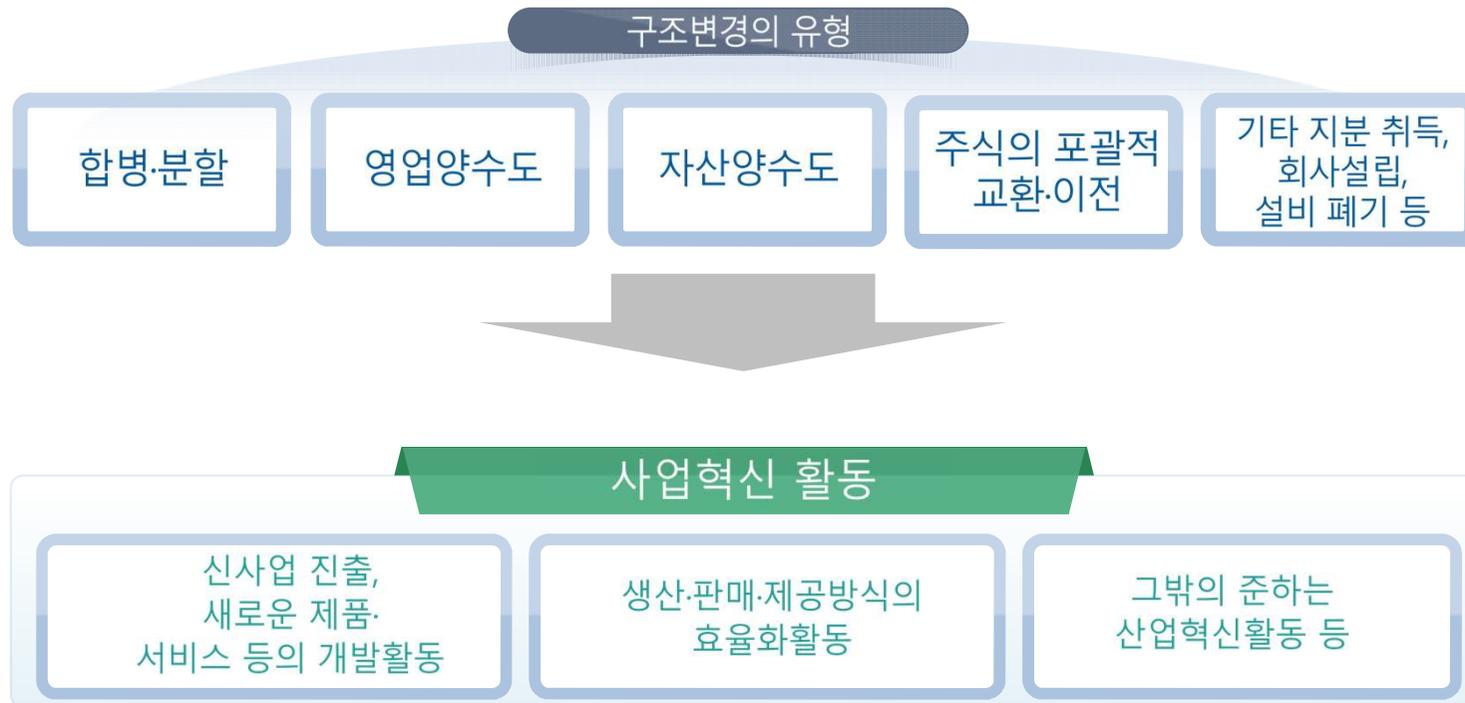
2019. 8.12. 개정 기업활력법 공포

2019. 8.13 개정 기업활력법 일부 시행

2019. 11.13 개정 기업활력법 본격 시행

2. 적용대상 - 사업재편(구조변경 + 사업혁신)

사업재편 인정범위



3. 적용대상 - 과잉공급업종,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

기업활력법 적용대상

(기존) 과잉공급 업종 + (추가) 신산업 진출 +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

적용대상	심사요건	계획기간	심의절차
과잉공급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과잉공급 업종 해당 ② 목표(생산성·재무건전성) ③ 사업재편(구조변경+사업혁신) ④ 지배구조 강화목적 여부 ⑤ 계열사 부당지원 여부 	3년 이내	신청 → 사전검토 → 심의 → 승인
신산업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산업에 해당 ② 목표(수익성, 고용·투자 등 지표) ③~⑤ 과잉공급 요건과 동일 	5년 이내	신청 → 사전검토 → 신산업판정 → 심의 → 승인
산업위기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②~⑤ 과잉공급 요건과 동일 	3년 이내	특별지역 지정 → 신청 → 사전검토 → 심의 → 승인

3. 적용대상 - 과잉공급업종 판단

과잉공급 판단기준

▶ 과잉공급에 속한 기업의 사업재편

▶ (과잉공급 지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시 과잉공급으로 인정

- 매출액영업이익률 : 최근 3년 평균이 과거 10년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

- 보조지표 : **(제조업)** 5개중 2개 이상 만족, **(서비스업)** 1개 이상 만족

① 가동률, ② 재고율, ③ 고용대비 서비스생산, ④ 가격·비용 변화율, ⑤ 업종별 지표

- 지속성 : 수요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수요변화에 쉽게 대응하기 어려워
과잉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

▶ (과잉공급 업종 기업의 목표 제시) 생산성 목표 및 재무건전성 목표 제시

* (생산성 목표) 총자산수익률, 유형자산회전율, 부가가치율 중 택 1

* (재무건전성 목표) 이자보상비율

[참고] 과잉공급 판단 지표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11.10.19> 공장등록관리시스템(www.fem.go.kr)
메서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증명(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기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주소
신청인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법인소재지)	
		김상남도 양산시	
등록 내용	공장소재지	지목	공장의 업종(분류번호) 유일부 및 그리스 제조업 외 2 숲(19221,20421,28301)
	경상남도 양산시	공장용지	
	공장등록일	사업시작일	
	공장의 업종(분류번호)		
		유일부 및 그리스 제조업 외 2 숲(19221,20421,28301)	
공장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등록 조건			
등록변경·승설등 기재사항 변경내용(변경 날짜 및 내용) 2003-12-19 사유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개정에 따른 업종분류 번호 수정(2008.05.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등록증명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3~5단위 코드

3. 적용대상 - 신산업 진출 기업

신산업 판단기준

▶ 신산업 진출 기업의 사업재편

- ▶ (신산업 범위) 「조특법」시행령의 신성장동력기술(現 173개) 활용 산업 또는 소위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
- (예시) 신재생에너지, 콘텐츠-소프트웨어, 로봇응용 등
- ▶ (신산업 판정시 고려사항) 기업이 진출하려는 사업의 신산업적 가치(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등)
- ▶ (신산업판정위원회)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당연직 3* + 산업부장관 위촉 전문가 7)**
* 산업부 고공단(위원장) 및 기재부·과기정통부 과장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 ▶ (신산업 진출 목표 제시) **수익성 목표 및 고용·투자 등 목표 제시**
* (수익성 목표) 매출액, 매출액영업이익률 중 택 1
* (고용투자 등 목표) 고용, 투자, 기업제시 목표 중 택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7]

1. 미래형자동차	자율주행차, 전기구동차
2. 지능정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착용형 스마트기기, IT 융합,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3. 차세대 소프트웨어 및 보안	기반 소프트웨어, 융합보안
4. 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문화 콘텐츠
5.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지능형 반도체 · 센서, 반도체 등 소재, 3D프린팅, AR 디바이스, 고기능 디스플레이(유기 발광 다이오드 등)
6. 차세대 방송통신	5세대 이동통신, UHD(Ultra-High Definition)
7. 바이오 · 헬스	바이오 · 화합물의약, 의료기기 · 헬스케어, 바이오 농수산 · 식품, 바이오 화장품 소재
8. 에너지신산업 · 환경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저감 및 탄소자원화, 원자력
9. 융복합 소재	고기능섬유, 초경량 금속, 하이퍼 플라스틱, 타이타늄
10. 로봇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 안전로봇, 의료 및 생활로봇, 로봇공통
11. 항공 · 우주	무인 이동체, 우주

3. 적용대상 -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

▶ 산업위기대응지역 주된 산업 사업재편

- ▶ 대상 산업 범위 및 지정 지역 ①「균특법」상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시·군·구)의 주된 산업 또는 ② 그 지역이 속한 광역시·도의 새로운 육성 산업

- (지정 지역) 울산 동구, 경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전북 군산 등

▶ 대상기업

- (① 주된 산업) 산업위기지역 내 본점·지점·사업장을 둔 기업 또는
그 위기지역이 속한 광역시·도내의 협력업체*

* 협력업체는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과의 거래비중이 3년 매출액(누적)중 20%이상인 경우에 한정

▶ (산업위기지역 주된산업 기업의 목표 제시) 과잉공급 업종 기업과 동일

- * (생산성 목표) 총자산수익률, 유형자산회전율, 부가가치율 중 택 1
- * (재무건전성 목표) 이자보상비율

3. 적용대상 -향상 목표치 만족

생산성·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 **생산성 향상 목표** 아래 조건 중 1개를 만족

지표	목표 기준
총자산수익률	▶ 2%p 이상 상승
유형자산회전율	▶ 5% 이상 상승
부가가치율	▶ 7% 이상 상승
기타	▶ 상기 기준에 상당하는 다른 지표의 개선

○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아래 조건 만족

지표	목표 기준
이자보상배율	▶ 10% 이상 상승
수익지표	▶ 영업이익 > 이자비용

3. 적용대상 - 공동사업재편

공동사업재편 활성화

▶ 심의 요건 및 제출 자료 등 완화

▶ 사업재편 요건완화

- (기존) 공동 신청한 기업이 각각 구조변경 + 사업혁신 행위를 만족
- (개정) 공동 신청한 기업이 **합하여** 구조변경 + 사업혁신 행위를 만족

▶ 승인신청시 제출하는 사항

- (기존) 공동 신청한 기업이 각각 필요성, 사업재편 내용, 투자계획 등 9가지 요소를 제출
- (개정) 공동 신청한 기업이 **합하여** 필요성, 사업재편 내용, 투자계획 등 9가지 요소 제출. 단, 생산성 향상 등 사업재편 목표는 공동 신청한 기업이 각각 제출

▶ 단, 공동 신청기업의 사업재편 행위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야 함

4. 패키지 지원 내용 – 세제 지원

양도차익 과세이연

▶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시 양도차익 과세이연(조특법 §121-26)

- ▶ (예시) x2년에 토지를 **100백만원**에 매각 (양도차익 **60백만원** 발생)
양도가액 100백만원 중 70백만원을 채무상환에 사용
x1년말 이월결손금은 **20백만원**

- 양도차익 상당액 = (양도차익 - 이월결손금) * 채무상환비율
⇒ (60백만원 - 20백만원) * 70% = 28백만원
- 과세이연

구분	20X2	20X3	20X4	20X5	20X6	20X7	20X8
익금불산입	28	-	-	-	-	-	-
익금산입	-	-	-	-	9.3	9.3	9.3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조특법 § 121-31)

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및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법 § 121-30)

4. 패키지 지원 내용 – 세제 지원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 ▶ (현행 법인세법) 기업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월하여 소득에서 공제하되,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60%한도로 공제
※ 중소기업, 회생·기업개선·경영정상화 중인 법인은 100%공제

(기활법 특례) 2020년부터 기활법 사업재편계획을 이행중인 기업에도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100% 한도로 이월결손금을 공제

채무면제이익 과세이연

- ▶ 모회사의 자회사 금융채무 인수·변제시 과세이연 (조특법 §121-27)
* 채무 인수 변제 이후 자회사의 지분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전부 양도할 경우
- ▶ 주주 등의 자산 무상양도로 금융채무 상환시 과세이연 (조특법 §121-28)
- ▶ 금융기관에 의한 채무면제시 과세이연 (조특법 §121-29)

4. 패키지 지원 내용 – 세제 지원

등록면허세 감면

- ▶ 설립등기·합병·증자 등으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자본금증가분의 0.4%)를 50% 감면

적격합병 기준 완화

매각시 인수대금 중 주식비중 기준을 기존 80%에서 70%로 완화

피합병회사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서 합병으로 인한 중복자산 제외

관세 납부부담 완화

※ 관세 체납기록이 없을 경우

- ▶ (신고납부세액) 전년도 관세 납부세액의 50% 범위내에서 무담보 납기연장(최대 6개월) 및 분할납부(최대 3회) 지원
- ▶ (추징세액/과태료) 무담보 납기연장(최대 1년, 과태료는 최대 9개월) 및 분할납부(최대 6회) 지원

4. 패키지 지원 내용 - 금융, 연구개발 지원

구분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지원혜택
금융 지원	사업재편 우대보증 (신보/기보)	설비, 운전자금, 연구개발 자금 등 우대보증	보증료율 0.2%p 인하 보증비율 90% 우대
	사업경쟁력강화지원자금 (산업은행)	설비, 운전자금, 연구개발 자금 등 대출(투자)	중소중견 0.5%p 금리 우대
	회사인수 자금대출 (기업은행)	중소기업의 M&A시 주식인수 소요 자금 지원 (50%이내)	1%p 금리 우대
연구 개발 지원	정부 R&D사업 우선 지원	R&D 사업 참여 지원	사업 선정 평가시 우대 가점 산업부 과제수행 한도 및 예외 적용 기술료 납부 유예 등
	사업화 용자 지원 (전담은행)	신산업 진출 및 신산업 핵심기술 확보 소요 자금 처리 용자 지원	사업재편기업 지원대상에 포함
	사업재편 지식재산 인수보증(기보)	지식재산 인수·사업화하는 기업 보증 지원	우선 추천, 보증비율 95% 적용, 보증료 0.3%p 감면

기타 연구개발지원

* 신산업육성펀드(산업부) : 신산업 진출 및 기술 확보를 위한 M&A 투자 지원(지원내용), 검토 후 투자(지원혜택)

** 전력신산업펀드(산업부) : 에너지 신산업 진출기업의 M&A, 기술확보 소요자금 지원(지원내용), 우대 가점 부여(지원혜택)

4. 패키지 지원 내용 - 고용안정, 중소.중견 특별지원

구분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지원혜택
고용 안정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노동부)	"고용조정 불가피 하게 된 사업주" 의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등)시 임금 보전분 일부 지원	"고용조정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외 사업재편기업 적용 가능
	직업능력훈련 지원(노동부)	전직, 재배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훈련비 지원비율 상향 우선지원대상기업 : 100% 1천명 미만 : 60→ 80% 1천명 이상 : 40→ 60%
	맞춤형 재취업(노동부)	실직자에 대한 맞춤형 재취업 패키 지 지원	사업재편기업 실직자는 취업성공패키지II 프로그램 신청시 소득제한 요건완화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복지부)	실직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75% 1년간 지원 (건강보험) 보험료 본인부담분 납부시 최대 3년간 건강보험 유지
중소 중견 기업용 특별 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중기부)	시설자금, 운전자금 저리 융자 지원	우선 심사 사업전환자금 용자한도 확대(60억→100억) 사업전환촉진자금 지원대상(업종전환기업 등)에 승인기업 포함

4. 패키지 지원 내용 - 해외마케팅, 자산매각 지원

구분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지원혜택
중소 중견 기업용 특별 지원	글로벌 강소기업 (중기부)	R&D, 해외마케팅 등을 패키지 지원	사업재편기업에 우대 가점 1점 부여
	스마트공장 (중기부)	스마트공장 신규구축부터 고도화, 시범공장, 업종별 특화 솔루션 구축까지 스마트 공장 구축 및 컨설팅에 대한 비용 지원	사업재편기업에 우대 가점 3점 부여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중기부)	미래성장산업, 사업전환, 스마트공장 구축, 화학물질 관리, 정보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컨설팅 지원	사업재편기업에 우대 가점 5점 부여
해외 마케팅 지원	월드챔프 (산업부, KOTRA)	'Pre 월드챔프' 선정시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 (전시회, 현지 세일즈 등)	승인기업을 우선 선정·지원
	수출금융 (산업부, 중기부)	수출품 제작시 원·부자재 구매비용, 공장 운영비용 등 지원	보증한도 1.5배 확대, 우선 심사·지원
기타 지원	유휴기계설비 매각 지원 (한국기계거래소)	유휴설비의 신속·공정한 매각 지원	승인기업은 매각수수료 40% 이상 우대

4. 패키지 지원 내용 – 상법 및 공정거래법 특례

주총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대체

소규모분할 신설

- ▶ 분할신설회사 총자산이 분할회사 총자산액의 10% 미만일 경우 주총을 이사회로 같음

소규모합병 범위확대

- ▶ 소멸회사 주주에게 지급하는 신주 및 자기주식 규모가 인수회사 주식총수의 20% 이하인 경우 인수회사 주총을 이사회로 같음

간이합병 범위확대

- ▶ 인수회사가 소멸회사 주식 80%이상 소유시 소멸회사 주총을 이사회로 같음

사업재편기간 단축

주총 전

- ▶ 주총소집기간(2주 ▶ 7영업일) 단축
- ▶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공고기간(2주 ▶ 7영업일) 단축

주총 후

- ▶ 채권자 이의제출 생략 또는 기간단축 (30일 ▶ 10영업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20일 ▶ 10일) 단축

주식매수청구에 따른 주식매수 의무기간 연장

상장기업

1개월 ▶ 3개월

비상장기업

2개월 ▶ 6개월

※ 단, 신산업 진출 기업의 사업재편에는 상법 및 공정거래법 특례 중 주식매수청구권 특례(법 제20조)만 부여

4. 패키지 지원 내용 – 공정거래법 특례 (신산업 진출 기업의 경우 제외)

지주회사 규제 유예

부채비율 규제

- ▶ 지주회사가 자본총액 2배 이상의 부채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공정거래법」규제를 3년간 유예

지분비율 규제

- ▶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지분규제* 및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하도록 한 「공정거래법」규제를 3년간 유예

* 지분규제 :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자회사는 손자회사 지분을 40%(상장회사 20%) 이상 보유, 지주회사는 비계열사 지분의 5% 이상 보유 금지

공동출자 규제

- ▶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간 공동출자를 금지한 「공정거래법」규제를 3년간 유예

대기업집단 규제 유예 또는 유예기간 연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정거래법」상 상호·순환출자 규제 유예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규제를 3년간 유예

* 단, 부채액이 자본액 2배 이상인 기업 적용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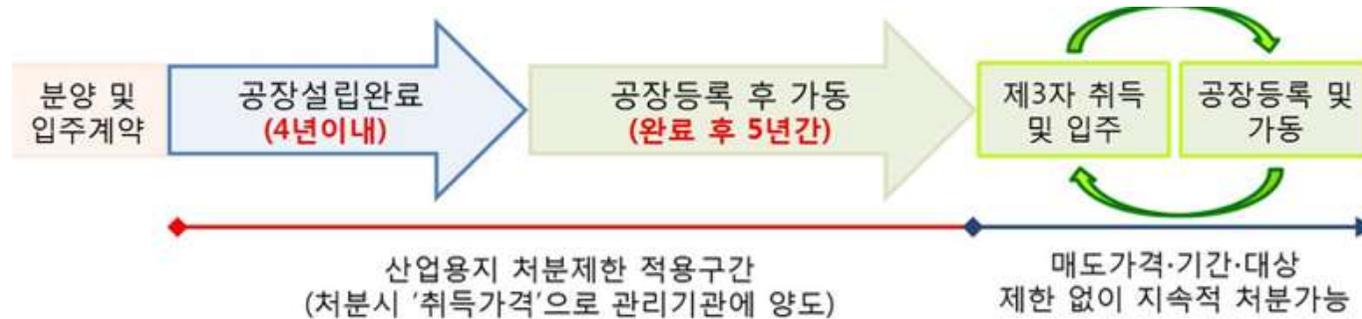
기업결합심사 합리화 : 기업결합신고창구 단일화, 기업결합심사시 부처의견 고려 가능

4. 패키지 지원 내용 – 산업용지 등 처분 특례

산업용지 등 처분 특례(신설)

- 산업용지 등을 처분제한 기간 내에 시세로 매각을 허용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상 산업용지 등 처분규제
 - (산집법) 처분제한 기간 내에 매각할 경우, 당초 산단 취득가격 수준의 매매만 가능

산업용지 처분관련 흐름도



4. 패키지 지원 내용 – 산업용지 등 처분 특례

산업용지 등 처분 특례(신설)

- **산업용지 등을 처분제한 기간 내에 시세로 매각을 허용**
 - ▶ **기활법 특례(신설)**
 - 처분제한 기간 내에 매각하더라도 시세매각을 허용. 단, 시세차익(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사업재편 투자에 의무화. 위반시, 과징금 부과 가능
 - ▶ **사업재편 의무투자 대상**
 - 사업재편을 위한 부지 매입
 - 사업재편을 위한 공장 신축·증축
 - 사업재편을 위한 설비 또는 지식재산권 등 유·무형 자산의 매입
 - 사업재편을 위한 기술개발과 직접 연관된 연구 시설·장비와 연구재료의 구입
 -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가 사업재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

4. 패키지 지원 내용 –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요건 완화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요건완화

▶ 지역투자촉진보조금

- ▶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지방투자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교부금(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을 지원)
- ▶ **(대상기업)** 지방이전기업,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 국내복귀 기업, 개성공단 기업, 조선기자재 기업
- ▶ **(기활법 인센티브)**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장 폐쇄·매각·임대·축소가 금지되나,
 - 기활법 승인기업의 경우, **투자규모가 축소규모보다 크면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으로 인정가능**

5. 지원·심의·승인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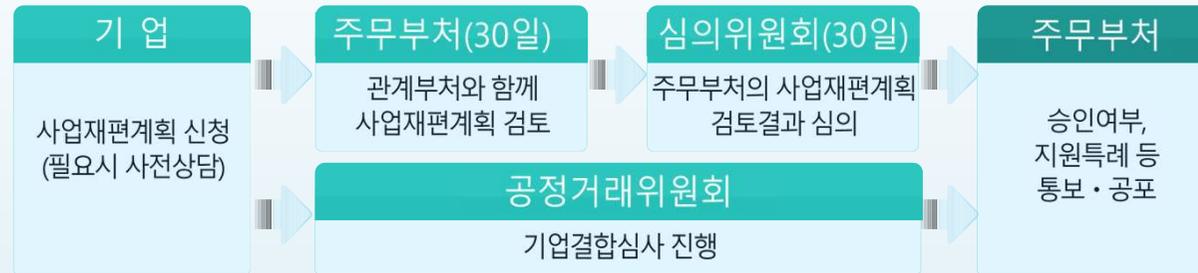
심 의

- 공정한 심의를 위해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 ▶ 위원장 2인(산업부 차관·민간위원) 포함하여 정부위원 4명, 민간 경제전문가 16명 내외로 구성



승 인

- 주무부처와 심의위원회가 생산성·재무건전성 목표, 과잉공급 여부, 악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60일 내 승인
 - ▶ 승인기간 단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를 동시에 진행
 - ▶ 신산업의 경우 별도로 신산업판정위원회를 거쳐 심의



지원기간

-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지원기간은 3년 이내(신산업 진출의 경우 5년)

6. 사업재편계획 승인 현황 ('19.7월 기준 109개 기업 승인)

승인기업 "과잉공급업종" 현황



승인기업 규모



대기업 : 7개사 중견기업 : 11개사 중소기업 : 91개사

6. 사업재편계획 승인 현황 ('19.7월 기준 109개 기업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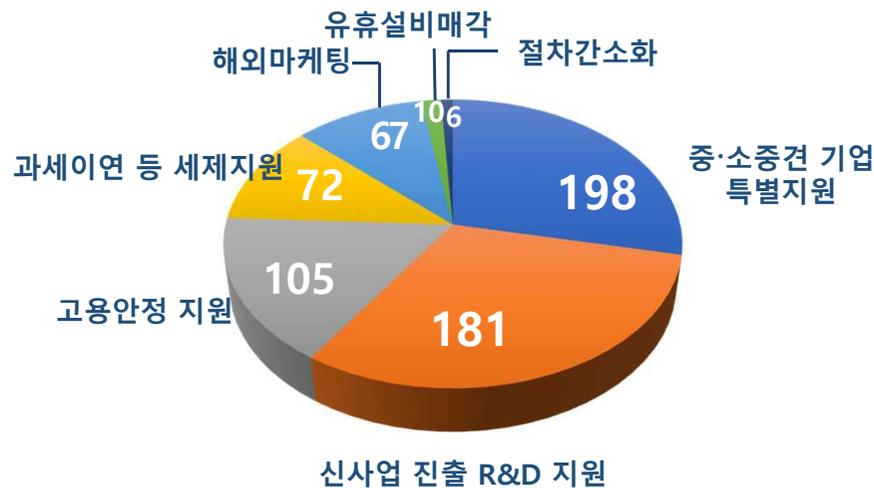
사업재편 유형



승인기업

-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 리진, 보광, 하이스틸, 신성솔라에너지
- 동국제강, 현대제철, 우신에이펙
- **LG**화학, 삼영기계, 벤틀스, 유일, 쓰리에스
- 지모스, 부산조선해양, 표준산업, 나재
- 대화정공, 칸정공, 두성금속, **LS**메탈, 성육철강
- 마이텍, 유시스, 태경중공업, 현대티엠씨
- 캐스트정보, 금강스틸, 호승기업, 태우산업
- **LG**실트론, 아이티씨, 신풍섬유, 영광, 원광밸브
- 일신**PTFE**공업, 아하산업, 디에이치콘트롤스
- 삼강엠엔티, 산신테크, 종로의료기, 카젠, 에이티세미콘, 가온전선
- 씨엔아이전선, 화인, 나브텍
- 고려전선, 한국전자재료, 애니테이프, 한솔테크, 삼영이엔지, 현성, 한서중공업, 성부
- 근우테크, 녹색섬유, 삼보산업, 서현기술단, 알파테크원, 영해엔지니어링, 태원, 테크플라워, 휘일라이팅
- 디자인메탈, 에스엔피월드, 지에이치아이, 에너지엔, 쓰리텍, 대성정밀, 경진정밀공업, 블루인더스, 파인중공업
- 대한방직, 제이엔케이허더, 신평산업, 에버가드, 에스이피, 수리인푸드, 한솔테크
- 한국메이드, 자유, 자유산업
- 블루에스피, 전방재엔지니어링, 테이팩스, 해성기업
- 티엘아이, 대금지오웰, 양수금속, 경용중공업, 진우이엔지
- 명일정공, 최고산업, 월스크린애플랜드, 랜티스, 선진정공, 변영중공업
- 근우이엔비, 일성하이스크, 흥진산업, **GMSI**
- 한국기능공사, 해민중공업, 대호비투버, 쿨스, 삼부강업

지원요청사항



7. 승인기업 사례로 보는 “기업활력법” (1)

한화케미칼, 공급과잉 상황의 가성소다 공장 매각
유니드, 공장 매입 후 고부가가치 제품인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



「지원혜택」

- 한화케미칼 : 양도차익 채무상환 과세이연
 정부 R&D 과제 우대 가점 ➡ 지원 완료
- 유니드 : 기업결합심사 특례 ➡ 지원 완료

7. 승인기업 사례로 보는 “기업활력법” (2)



농기계 주력 생산 업체

국내 농기계시장 경쟁 과열, 일본기업 진출로
경영 악화 및 과잉공급 상황



인수 후 양사의 **중복 생산 품목 및 설비 조정**을 통한 **과잉공급 해소!**
R&D 및 판매망 확대, 농기계의 전문화·대형화를 위한 사업혁신

「지원혜택」 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 → 신속한 기업결합 승인 정부 R&D 과제 신청 시 우대 가점 **신청 혜택 전부 지원 완료**

7. 승인기업 사례로 보는 “기업활력법”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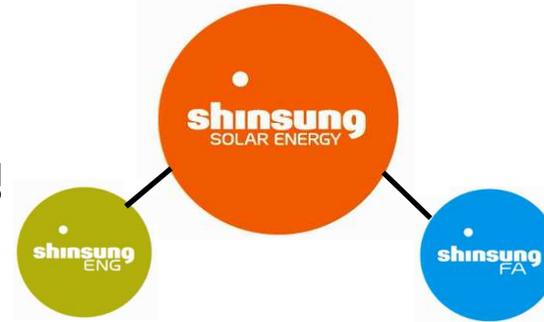


태양광 제품 제조업 공기정화설비 제조업 공장자동화 설비 제조업



국내 태양광 제품 시장 과잉공급, 중국의 생산량 증가로 상황

“ ‘신성솔라에너지’가
자회사인 신성ENG 신성FA 합병 ”



- 3개사 합병을 통해 **이자비용 감축 및 신규 투자자금 확보**
- 생산설비를 개조하여 경쟁력 높은 제품을 생산
→ **국내 과잉공급 해소 및 신사업 창출 효과**

「지원혜택」

- ☑ **상법상 절차 간소화 (기간 단축)**
- ☑ **합병에 따른 등록면허세 50% 감면**
- ☑ **정부 R&D 과제 신청 시 우대 가점**

⇒ **신청 혜택 전부 지원 완료**

7. 승인기업 사례로 보는 “기업활력법” (4)

철강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체



포항 제2후판 공장 및 설비 매각
생산능력 감축 (330만ton → 150만ton)



고부가가치 컬러강판 설비 증설
생산능력 증대 (64.5만ton → 74.5만ton)

“**친환경·고부가 신제품 및 기술 개발로**
기업 경쟁력과 수익성 강화!”



「지원혜택」

☑ 친환경·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정부 R&D 과제 신청 시 가점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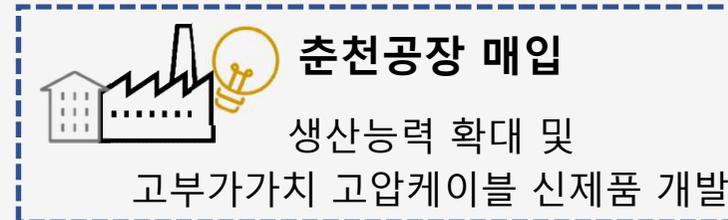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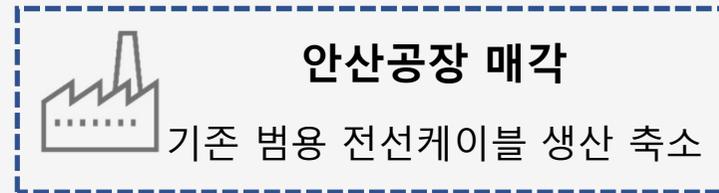
➡ 지원 완료

7. 승인기업 사례로 보는 “기업활력법” (5)

전선 제품 연구·개발·제조·판매 업체



기존 업체 설비증설 및 신규 업체 창업
→ 전선시장 현재 수요 대비 공급과잉 상황



➡ 지원 완료

「지원혜택」

- ✓ **매각대금 양도차익 과세이연** (공장 매각)
- ✓ **R&D 인력채용 우대 지원**
- ✓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우대 지원**

- ✓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 ✓ **고용안정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직업능력훈련)
- ✓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사업 우대**

7. 승인기업 사례로 보는 “기업활력법” (6)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 국내 조선소 선박 수주량 감소 → 사업 악화

□ 기존사업 철수

- 선박용 강재(철판)절단
- 육상플랜트 기자재 제조



□ 구조 변경

- 철판 절단설비 매각



연구개발(자동화용접공법)을 통해 건설장비 부품 제조사업 진출

□ 신규사업 진출

- 타워크레인 마스트
- 카고크레인 붐



□ 구조 변경

- 군산 공장 신설
- 자동용접장치 매입



「지원혜택」



지원 완료

✓ 매각대금 양도차익 과세이연

✓ 정부 R&D 사업 우대(가점 등)

✓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우대**(신규 수출기업화 지원 프로그램)

✓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 **스마트공장 우대지원**

7. 승인기업 사례로 보는 “기업활력법” (7)

전력선·절연선 및 나동선 유통 업체

건설경기 부진& 과잉공급으로 경영상황 악화



- 기존사업 축소
 - 산업용 저압선 생산 축소
 - 나동선 생산 철수
- 구조 변경
 - 기존 생산 공장 및 설비 일부 매각



고부가가치 분야 활성화로 기업 경쟁력 강화



- 사업 혁신
 - 고부가가치 특수전선 사업확대
(철선 외장 케이블, 통신용 전선 등)
- 구조 변경
 - 신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 및 설비 신규 인수



▶ 지원 완료

- ✓ 양도차익 채무상환 과세이연
- ✓ 정부 R&D 사업 우대(가점 등)
- ✓ 무역보험 보증 한도 우대

「지원혜택」

- ✓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및 맞춤형 컨설
- ✓ 고용안정 지원 (고용유형 지원금, 직업능력훈련 등)
- ✓ 유희기계설비 매각 우대

7. 승인기업 사례로 보는 “기업활력법” (8)

조선경기침체로 인한 선박용 소방장비 매출 악화



- 기존사업 축소
→ 선박용 소방장비 사업 축소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 확대로 기업 경쟁력 강화



- 사업혁신
→ 육상용 소방 장비 신규 생산
- 구조 변경
 - 공장부지 매입 및 공장신축
 - 생산설비 매입

「지원혜택」

➡ 지원 완료

- ☑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 ☑ 정부 R&D 사업 우대(가점 등)
- ☑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우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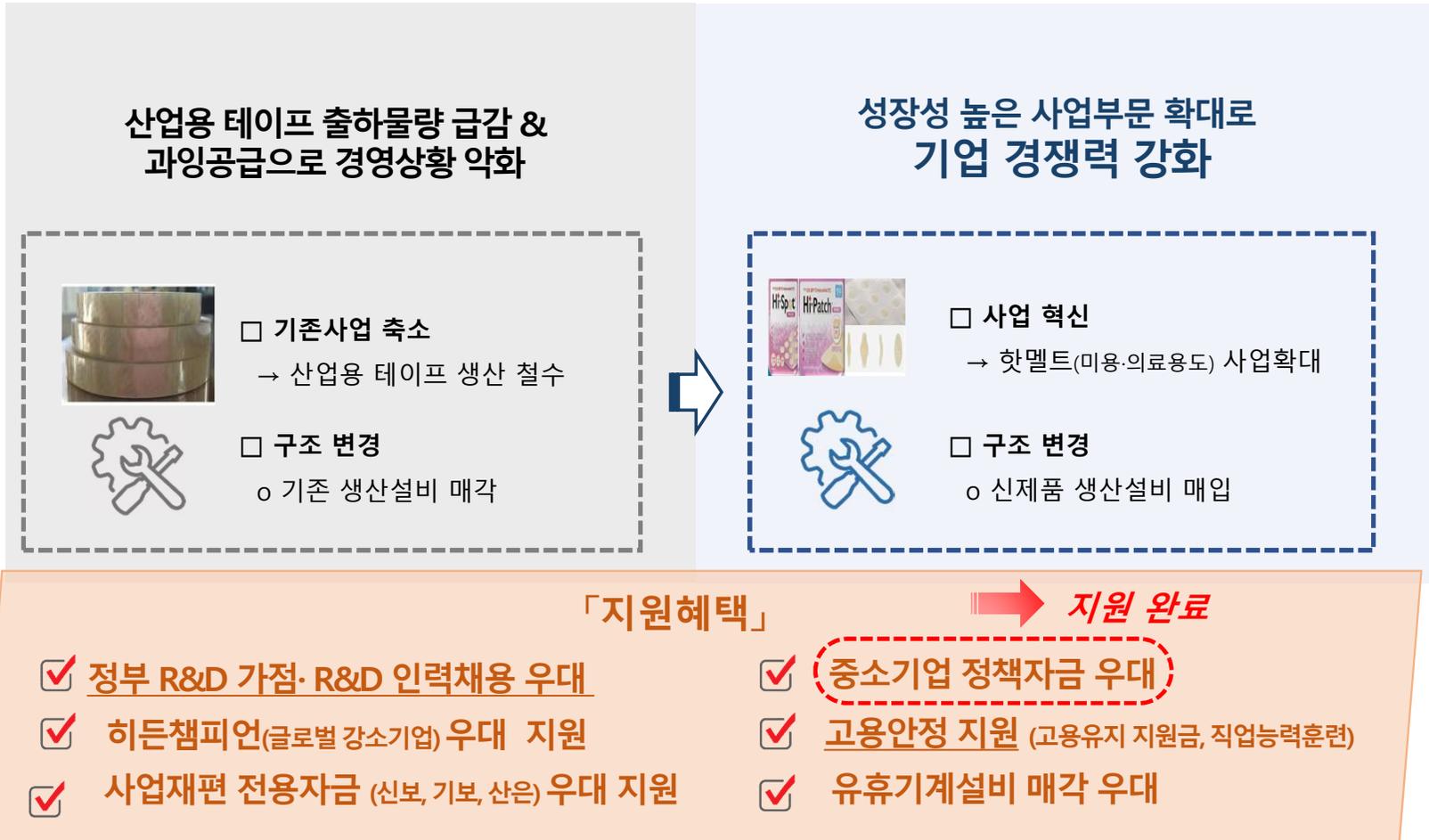
- ☑ 글로벌강소기업 우대 지원
- ☑ 고용안정 우대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직업능력훈련)

7. 승인기업 사례로 보는 “기업활력법” (9)

(주)애니테이프



핫멜트 및 산업용 테이프 생산 업체



7. 승인기업 사례로 보는 “기업활력법” (10)

금속·세라믹 소재 전자기기·전기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

유사업체 증가 등
과잉공급으로 경영상황 악화



- 기존사업 축소
→ 전자기기 부품 사업 축소



- 구조 변경
 - 공장 매각
 - 설비 개조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 확대로
기업 경쟁력 강화



- 사업 혁신
→ 전기자동차 부품사업 확대



- 구조 변경
 - 신규 공장 건설
 - 신사업 관련 설비 매입

➡ 지원 완료

「지원혜택」

- ✓ 매각대금 양도차익 과세이연 (공장 매각)
- ✓ 정부 R&D 가점·R&D 인력채용 우대
- ✓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우대 지원

- ✓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 ✓ 고용안정 지원 (직업능력훈련)
- ✓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우대

7. 승인기업 사례로 보는 “기업활력법” (11)

철도 엔지니어링(설계·감리) 업체

철도엔지니어링 유사업체 증가 등 과잉공급으로 경영상황 악화

- 기존사업 축소
→ 철도 설계·감리 사업 축소
- 구조 변경
 - 기존 사옥 매각
 - 철도 엔지니어링
관련 지식재산 매각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 확대로 기업 경쟁력 강화

- 신규사업 진출
 - 안전진단(교량·터널 등) 용역
 - 상·하수도 설계업
 - IoT 기반 철도 엔지니어링
- 구조 변경
 - 신규 사옥 건립
 - 신사업 관련 설비 매입



➡ 지원 완료

「지원혜택」

✓ 매각대금 양도차익 과세이연 (사옥 매각)

✓ R&D 인력채용 우대 · R&D 사업화 용자 지원

✓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 고용안정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7. 승인기업 사례로 보는 “기업활력법” (12)

- 조선경기침체로 인한 산업용품의 매출부진에 직면

용접복 등 산업용품 제조기업



산업안전용품
생산설비 매각
(89%에서 25%로 **매출축소**)



보건마스크 제조
생산설비 전환
(11%에서 42%로 **매출확대**)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장치 기술개발
보건마스크 자동화 생산설비 도입
(생산효율성 향상)

「지원혜택」

- ✓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 ✓ 정부 R&D 가점·R&D 인력채용 우대
- ✓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우대 지원
- ✓ 글로벌강소기업 우대지원
- ✓ 신규 수출기업화 지원프로그램 우대지원

7. 승인기업 사례로 보는 “기업활력법” (13)

LCD부품 제조업체

- 중국의 디스플레이 육성정책으로 시장상황 악화
- LCD시장 경쟁 강도 심화



「지원혜택」

- ✓ 소규모 분할 특례
- ✓ 정부 R&D 우대 지원
- ✓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 ✓ 근로자 능력개발, 고용안정 지원

[참고] 승인기업 공표 및 공고 사항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625호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

일련번호 (승인일제)	기업명	대표자	본청 소재지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및 지원사항
8 (2016.11.22)	동국제강㈜	장세욱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로59번 19 제철타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성) 국내 후관 시장의 과잉공급 해소 및 고부가가치 친환경 제품 개발을 통한 기업 수익성 강화 ○ (기간) 2016년 11월 ~ 2019년 10월 ○ (주요내용) ①로봇 후판 공장 설비 배차, ②고급 컬러강판 사업 강화, ③친환경 철강인관, 초대형 11'당강, 고효율 전기로 기술 등 친환경 고부가 제품 개발 ○ (지원사항) 정부 R&D 후대 지원
9 (2016.11.22)	현대제철㈜	유유철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성) 국내 단강시장의 과잉공급을 개선하고, 신임구 조 고도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 ○ (기간) 2016년 11월 ~ 2019년 10월 ○ (주요내용) ①인원공정 단강(일강) 생산을 전기로 배차, ②순환공정에 고부가 단조제품 신규개발 생산 및 설비투자 ○ (지원사항) ①과제 남기연장 분담(연계형 제10조 사업재편 관련상 등 고려), ②장부 R&D 후대 지원
10 (2016.11.22)	㈜우신에이텍	이종훈 이성규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산산단 381로 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성) 사업재편을 통한 알루미늄 제품 판매 분야 과잉공급 해소에 기여하고 신성장 분야로 진출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 ○ (기간) 2016년 11월 ~ 2019년 10월 ○ (주요내용) ①김해공장 알루미늄 제품 및 관련 생산설비 배차 또는 폐기, ②후조열(선박용 LED 등) 분야의 신규 생산설비 투자 ○ (지원사항) 정부 R&D 후대 지원

●환경부공고제2016-828호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5-085호, 2015.6.30)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환경부장관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의 소음측정 운영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2층 이상 건물에서의 소음 측정시 건축구조나 안전상의 이유로 외부측정(상문밖 0.5~1.0m)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창문 등의 경계면 지점으로 하고, +15 dB를 보정

1) 적용대상 : 생활소음, 발파소음, 도로교통소음, 철도소음

247

[관보]

30년째 혁신, 30년째 성장

산업통상자원부

수신 (우)우신에이텍 (경유)
 제목 사업재편계획 승인 통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귀사가 제출(16.10.14)한 사업재편계획을 불일과 같이 승인하오니 사업재편계획의 이행에 만전을 기하십시오.

붙임 : 사업재편계획 승인내용, 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인

기업장차관 홍세민 2016년 11월 30일
 과·국장 최부서

합주소
 서울 용역산업단지-1145 (2)16, 11, 24, 25
 우 3011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40, (마산동, 산업통상자원부) / http://www.mta.go.kr
 전화번호 044-203-4832 팩스번호 044-203-4832 / amkko@mota.go.kr / k
 홈페이지 홈페이지 미(미)가 달리지 않습니다.

[회사 게재 공고]

사업재편계획 승인내용

일련번호 (승인일제)	기업명	대표자	본청 소재지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및 지원사항
10 (2016.11.22)	우신에이텍	이종훈 이성규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산산단 381로 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성) 사업재편을 통한 알루미늄 제품 판매 분야 과잉공급 해소에 기여하고 신성장 분야로 진출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 ○ (기간) 2016년 11월 ~ 2019년 10월 ○ (주요내용) ① 김해공장 알루미늄 제품 및 관련 생산설비 배차 또는 폐기, ② 특수조열(선박용 LED 등) 분야의 신규 생산설비 투자 ○ (지원사항) 정부 R&D 후대 지원

[참고] 기업활력법 종합포털 - www.oneshot.or.kr

기업활력법 종합포털

[포털 소개](#)
[기업활력법이란](#)
[주요 지원내용](#)
[신청 방법](#)
[정보마당](#)
[소통광장](#)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



기업의 활력과
산업 경쟁력
강화



가활법 소개



주요 지원혜택 안내

센터장
—
노급기 상무

기획운영팀

통계분석팀

제도지원팀

사업재편 지원사업 운영 총괄	과잉공급 기반 구축·운영	제도 및 기업 자원 기반 구축·운영
<p>손영기 팀장 02-6050-3161 yiksohn@korcham.net</p> <p>전준범 과장 02-6050-3162 jbjeon@korcham.net</p> <p>천하람 변호사 02-6050-3164 haram.chun@joowonlaw.com</p> <p>이예원 연구원 02-6050-3163 yewon0521@korcham.net</p>	<p>최문영 연구원 02-6050-3841 mchoi@kiet.re.kr</p>	<p>유종관 팀장 02-6050-3831 jkryu@korcham.net</p> <p>권영욱 부팀장 02-6050-3833 yokwon@korcham.net</p> <p>김문영 전문위원 02-6050-3832 mykim@korcham.net</p> <p>김민정 연구원 02-6050-3835 mjkim1454@korcham.net</p> <p>김 후 연구원 02-6050-3837 wowho10@korcham.net</p> <p>정재영 연구원 02-6050-3834 jjy@korcham.net</p> <p>최인영 연구원 02-6050-3836 jaes0418@korcham.net</p>

최신 정보

공지사항 2019-09-10
[설명·상담회 안내] 2019 한국자동차산업전시회...

공표사항 2019-07-31
2019.7월 사업재편계획 승인 및 이행사항 보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
조문 확인 바로가기

1:1 비공개 상담

감사합니다